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정관에 의하여 제반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운영 세칙을 정함으로써 사회복지선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복지증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하 법인)의 운영규정은 산하기관과 교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본 규정에서 교회라 함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와 산하 각 노회, 각 지 교회 또는 교회에 소속된 단체로서 법인에 소정의 절차를 걸쳐 등록한 교회 등을 말한다.

제2장 조 직

제3조 (산하기관 및 위원회)

1. 산하기관

- 1) 산하기관은 정부로부터 위탁된 위탁기관을 포함하여 법인이 설치운영·지원하는 기관 및 법인에 등록된 교회 또는 기관을 말한다.
- 2) 산하기관은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의 승인을 얻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 3) 산하기관의 장(長) 또는 시설장, 관리급(부장 또는 실장)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면은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4) 산하기관은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산하기관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익사업으로 발생된 수익금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하여

야 한다.

- 6) 산하기관은 정관과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1월까지 전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자료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새 년도 사업과 예산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 7) 산하기관은 정관과 운영규정에 따라 사업과 재정에 대한 법인의 지도점검과 감사를 성실하게 받아야 할 의무를 지며, 법인의 발전에 협력 도모하여야 한다.
- 8) 산하기관은 인사, 사업 및 재산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인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전문위원회

- 1) 법인은 교단의 사회복지선교의 정책과 사회적 과제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위원회를 둔다.
- 2) 사회복지전문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2인과 노회의 사회복지전문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위원회의 대표로 구성하며, 약간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3) 사회복지전문위원회는 교단 내 사회복지 관련 기구들과 협력하여 사회복지선교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노회 또는 지 교회가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4조 (자문위원회 및 후원회)

1. 자문위원회 : 이사회 또는 사회복지선교위원회가 요청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책·조정, 조사 연구, 교육·훈련, 출판 홍보, 시설 관장 등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2. 후원회 :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회복지선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운영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후원회를 둔다.

제5조 (부설기관)

정관 제1장 총칙 제4조에 명시된 사업을 위해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지원교회 등록 및 절차

제6조 (운영지원교회 등록 및 절차)

1. 본 법인에 운영지원교회로 등록하고자 하는 교회는 법인에 재산을 등록할 수 있고 (법인에 부동산이나 동산을 등록), 안전공탁금 규정에 따라 실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 교회시설과 별도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에 한하여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헌납해야 한다.
3. 본 법인에 등록하여 법인의 명의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노회를 경유하여 법인의 이사회에 신청한다.
4. 등록절차는 등록신청서, 법인에 등록할 재산의 증빙서류, 당회록, 공동의회록, 공증된 약정서, 사업을 위한 재정확보 계획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5. 등록 및 탈퇴 등 본 법인과 관련된 제반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6. 본 법인에 등록한 교회는 운영지원교회로서의 지위와 명예를 가지며, 법인에서 시달되는 각종 교육과 행정지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법인과 공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발전과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선한 동반자로서 협력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법인 운영경비의 부담)

법인에 등록한 운영지원교회는 운영지원을 위해 재산증여를 할 수 있고, 후원금, 안전공탁금 등 법인에 필요한 실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안전공탁금은 운영지원교회의 전년도 결산에 따르며, 그 액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운영지원교회 철회)

법인에 등록한 운영지원교회가 운영지원교회를 철회할 경우에는 법인이사회에 최소 6개월 전에 공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약정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4장 재산 관리 및 처분

제9조 (재산 관리 및 처리)

본 법인의 산하기관 및 교회는 본 법인의 재산에 대한 성실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본 법인 명의로 재산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관 제6조에 의해 처리하도록 한다.

제10조 (처분신청)

본 법인 산하 각 운영지원교회 및 재산증여자가 재산처분을 원칙적으로는 요청할 수 없고, 이전이나 기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한하여 요청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서(그 사유를 명기할 것)
2. 소속기관의 회의록과 직속상부기관의 동의서
3. 처분계획서
4. 재산 감정 평가서(매도, 증여, 교환)

제5장 사무국

제11조 (직원)

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에는 업무에 따라 직원 약간을 둔다.
2. 직원은 상임이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3. 직원의 정년과 보수 등 인사관리는 총회 본부 처무규정에 준한다.

제6장 법인과 분사무소

제12조(법인과 분사무소 관계)

본 법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의 분사무소를 두되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시군구의 시설 단위의 분사무소는 등기의 근거로만 삼는다.

1. 분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3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분사무소는 본 법인 관할 하에 두고 법인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3. 분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법인의 내규에 따라 운영한다.
4. 법인은 분사무소가 법인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사회를 결의하여 대표이사가 분사무소의 운영을 정지 및 해산을 할 수 있다.
5. 분사무소는 사무국을 두어 법인의 산하기관을 지원할 수 있으며, 법인의 제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6. 분사무소의 사업과 운영에 들어가는 재정은 관련 노회와 협력하여 확보한다.
7. 분사무소는 사업의 운영주체가 될 수 없으며, 지도 및 감독의 권한이 없다.

제 13조 (법인 분립)

해 노회의 현의가 있을 시 법인을 분립할 수 있다.

제 14조(분사무소 운영위원회)

본 법인의 분사무소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운영위원회는 지역 사회의 사회복지 발전과 사회복지선교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분사무소 관할 지역에서 법인의 산하기관을 지원한다.
2. 운영위원회는 법인 산하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산하 시설의 자문과 협력을 한다.
3. 운영위원회는 법인의 신규 위탁사업의 적합한 운영지원교회를 심의 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법인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둔다.

제7장 인사에 관한 규정

제 15조 (관장 또는 시설장의 임기)

법인 산하기관의 관장, 시설장, 센터장, 원장 등 시설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16조 (재임용의 보고)

법인 산하기관의 관장, 시설장, 센터장, 원장 등 시설의 장은 임기 3개월 전 재임용 청원서를 법인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재임용 절차에 착수하여 운영지원교회의 서면 평가 및 법인 인사위원회의 서면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에 재임용을 받아야 한다. 단, 재임용의 절차를 받지 아니하는 시설의 장은 그 임기를 해당 임용임기까지만 하며, 운영지원 교회 없이 법인 직영 시설은 법인의 인사위원회의 서면 평가로 한다.

제17조 (법인 인사위원회 구성)

법인 인사위원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서기이사, 추천 이사 1인, 사무국장으로 한다. 단, 추천 이사는 해당 시설 지역 이사로 호선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18조 (서면 결의)

대표이사는 부의 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결의로서 이사회에 결의를 대할 수 있다. 단, 과반수 이사가 정식 회의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시행)

본 내규는 본 법인 이사회에 통과 후 총회 인준을 받아 실시한다.

제20조 (제정 및 개정)

본 내규를 개정하려면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개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1996년 9월 제81회 총회 제정
- 1997년 9월 제82회 총회 개정
- 1998년 9월 제83회 총회 개정
- 2004년 9월 제89회 총회 개정
- 2008년 9월 제93회 총회 개정

2009년 9월 제94회 총회 개정
2010년 9월 제95회 총회 개정
2011년 9월 제96회 총회 개정
2012년 9월 제97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 101회 총회 개정